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3 선고 2019가단5551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0. 4. 2.

판결 선고2020. 4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6,386,479원 및 그 중 38,914,833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20. 3. 5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희근

별지